

테라 공모주 일반사모 투자신탁 제1호

신탁계약서

협회펀드코드: K554R5DY77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주)테라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엔에이치투자증권(주)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3.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자산의 비율에 관한 제한이 없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사모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법 제9조 제19항 제2호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0. "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11. "협회"라 함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테라 공모주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3. 개방형
4. 추가형
5. 사모형
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③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교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환매연기·부실자산 상각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중
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④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더
욱이 성과보수를 성과보수 인출시점에 계산하여 인출하므로 투자자는 기준가격으로 예상한 운용성과보다
미달하는 성과를 실현할 수 있다.

제4조(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법시행령 제271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2.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제5조(투자권유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적격투자
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영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적격투자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의 적용을 별
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271조의5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이 포함된 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핵심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항(경미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71조의5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변
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 내역의 일치여부 확인업무, 투자신탁재
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
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7조(전담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담중개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1. 증권의 대차 또는 그 중개, 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3.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 체결업무
5. 집합투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한 취득, 처분 등의 업무
6.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 대리업무
7.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8.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 대리업무
9.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또는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10.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를 하는 업무

제8조(업무의 위탁) <삭제>

제9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 및 핵심상품설명서에서 정한 사항 중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조당 1원을 기준으로 제32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조좌로 한다.

제11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10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9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9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 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2장 수익증권 등



제13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3. 그 밖에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5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자는 그 수익증권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양도의 결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수익증권의 양도시 양수인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합병승인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7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 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혼합자산형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공모주(IPO) 수요예측 참여와 채권,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후순위채권, 주식관련사채권을 포함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를 포함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6.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8. 증권의 차입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4.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20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이 투자신탁은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령이 정한 한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대상자산이 취득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가.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 나.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 다. 환매조건부 매도(증권을 일정기간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 라.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 금액
3.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2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3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위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위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등의이행 또는 보관·관리등에 필요한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한다.

⑤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핵심상품설명서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핵심상품설명서가 관련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5조(수익증권의 판매)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 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6조(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100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일반투자자의 총수는 49인 이하이어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수를 산출함에 있어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③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합산하여야 한다.

④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한다.

제27조(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8조(수익증권의 환매)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



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수익자의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성과보수를 차감한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성과보수,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환매연기)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판매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

④판매회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해당 판매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수익증권의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7조 및 영 제257조에 따라 수익자총회 결의를 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⑦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⑧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⑨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⑩집합투자업자는 제9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⑪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3영업일(15시30분 이후 제4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31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한다.

제33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①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2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회계기간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날에 임의결산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결산이 있을 경우 다음 회계기간은 직전 회계일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 12개월로 한다.

제34조(결산서류의 작성 및 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산,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35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분에 따른 매매이익
3.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결산 시 이익분배금을 이익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36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14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9조(수익자총회)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의 적용 배제에 따라 법 제191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및 그와 관련된 사항 역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매연기의 경우(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23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40조(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이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제41조(성과보수)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보수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②성과보수는 수익자 계좌별·판매사별로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계산되며, 제4항에서 정한 성과보수 인출시점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판매회사로부터 수취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한다.

③성과보수는 수익자 계좌별로 그 수익증권 보유기간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성과보수계산기간

- 가. 수익자의 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말일까지
나. 가목에 따른 회계연도 이후에는 회계연도 초일부터 매 회계연도 말일까지
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회계연도 초일부터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다만, 가목에 따른 기간 이전에 환매하는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2. 성과보수 금액 및 계산방법

가. 성과보수 금액 : $\text{Max}[\text{수익금액}_{(1)} * \text{성과보수율}_{(2)}, 0]$

나. 계산방법

(1) 수익금액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³⁾ - 취득가액 ⁽⁴⁾
(2) 성과보수율	15%
(3) 성과보수 계산 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해당일 현재좌수 * 해당일에 계산된 1좌당 결산시 기준가격. 다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좌수 * 1좌당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4) 취득가액	매입좌수 * 1좌당 매입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다만, 매수 후 첫 회계기간 이후에는 해당 회계연도 초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5) 회계연도 초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해당일 현재좌수(해당일 재투자좌수 포함) * 해당일에 적용되는 1좌당 기준가격

3. 성과보수 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에서 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차감한 금액이 투자원금((4)취득가액과 재투자금액을 포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성과보수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계산된 성과보수를 다음 각 호에 정한 날에 취득한다.

1. 이익분배금 지급일. 다만, 당해 이익분배금보다 성과보수가 클 경우 이익분배금 범위 내에서 성과보수를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까지 이연되며, 다음 이익분

배금 지급일에 당해 이연된 성과보수와 해당 성과보수보수계산기간 동안 발생한 성과보수를 해당 이익분배금으로부터 취득하되, 이연된 성과보수를 순차적으로 우선 지급한 후 해당 성과보수 계산기간 동안 발생한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2. 수익증권의 일부환매일. 다만, 이 경우에는 위의 제1호에 따라 이연된 모든 성과보수와 당해 성과보수를 환매금액으로부터 일부환매된 금액에 비례하여 취득한다.
3. 수익증권의 전부환매일. 다만, 이 경우에는 위의 제1호에 따라 이연된 모든 성과보수와 당해 성과보수를 환매금액으로부터 취득한다.

⑤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더욱이 성과보수를 성과보수 인출시점에 계산하여 인출함으로 투자자는 기준가격으로 예상한 운용성과보다 미달하는 성과를 실현할 수 있다.

⑥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의 경력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운용인력 경력

성명	직위	업무	주요경력 및 이력
김동환	대표이사	총괄	現테라자산운용 대표이사 前한화생명보험 신탁팀 운용역
심현보	이사	투자운용	現테라자산운용 투자운용본부 운용역

2. 운용인력 성과 : 해당사항없음

제42조(환매수수료) 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8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43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6.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8. 전담중개업자의 전담중개업무 관련 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44조(전담중개업자 관련비용) 제43조제2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전담중개업자의 전담중개업무 관련 비용”이라 함은 제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해당 업무수행시 발생하는 교통비 등 실비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5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체 수익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주된 투자대상자산, 투자전략 및 운용제한(금전차입등을 포함한다)등의 변경
2.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3. 신탁업자의 변경(제46조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④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은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



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6개월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핵심상품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47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3.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48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7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47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9조(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수익증권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51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 28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재산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9조제2항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손해배상책임)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서·핵심상품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4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5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 ㈜테라자산운용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5, 302호

(여의도동, 신태진빌딩)

대표이사 김 동 환 (인)



신탁업자 : NH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대표이사 윤 병 윤 (인)

